

1. 예산총칙

2023년도 【제2회 추가경정】

* 제1조 :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예산액	일시차입한도액
합	계	762,666,961	22,880,009
일반회계	계	667,543,468	20,026,304
특별회계	계	95,123,493	2,853,705
공기업특별회계	계	15,221,545	456,646
지방상수도사업		15,221,545	456,646
기타특별회계	계	79,901,948	2,397,058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	844,541	25,336
의료급여사업		1,055,419	31,663
농공단지조성사업		296,589	8,898
중소기업육성기금사업		6,549,813	196,494
일반산업단지조성		2,007,464	60,224
하천골재채취근직영사업		8,821,270	264,638
농업발전기금		8,191,107	245,733
수질개선사업		52,135,745	1,564,072

- * 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- * 제3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25,156,094천원으로 한다.
- * 제4조 :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발행한도액은 30,700,000천원으로 한다.
- * 제5조 : 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